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320
----------	------

2023. 12. 18.
주택공간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- 2023. 10. 13. 김춘곤 의원 발의 (2023. 10. 23. 회부)

2. 제안이유

-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5조제1항제1호의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약칭을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함.(안 제2조의2제1항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오정균)

-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을 ‘법’으로 약칭하는 조문의 위치를 현행 제5조에서 제2조의2로 변경하고, 이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	02-2180-8204
입 법 조 사 관 조윤길	02-2180-8208